



1.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자료

[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자료④ 학부모용 - YouTube](#)

위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

2.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자료

[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: 약칭 “교원지위법”]으로
“선생님들의 교육할 권리”,

“교권”

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지만,
일부 교육 현장에서 무수한 ‘교육활동 침해 행위’로
▲**교권 침해**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↓

이는 선생님을 상처 입히고,
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도 돌아가고 있습니다.

정신적 피해 수업 지장
사기 저하 일상 지장

선생님을 좌절시키고, 학생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

“교육활동 침해”

이렇게 **침해 유형** 부터 **행위 주체** 까지 다양합니다.
앞선 사례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‘교권침해’ 행위인 만큼,
모두가 **주의**해야 하는 건 당연하겠지요?

그런데,
우리가 미처 ‘**하는 줄도 모른 채**’
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왔던
‘교육활동 침해 행위’들이 있습니다

▶ 이제부터라도 조심하기 위해
어떤 상황을 주의하면 좋을 지
[사례]를 통해 살펴볼까요?

1

“늦은 시간, 시급하지 않은 / 학교생활과 무관한 연락” 삼가기

선생님 우리에 내일 숙제가 무엇죠?
선생님 전화가 무서워요...
퇴근이 없어요...

학생, 학부모님의 권리 만큼, **선생님의 개인 시간** 역시 소중하겠죠?

2

“SNS, 인터넷 통한, 선생님의 개인정보, 사생활 침해” 삼가기

우리반 쌤 사진 못기게 나왔대 인터넷엔 올리자 ㅋㅋ

전체공개!
우리 반 000선생님
휴대전화번호
010 - XXXX - XXXX
30명이 좋아합니다
00명월의 찬양과박사지
휴대로 구독 들어와주세요

선생님 연락처는 ‘공공재’가 아니에요...
(실명, 사진 등) ‘프라이버시’ 지켜주세요...

학생, 학부모님의 권리 만큼, **선생님의 개인정보, 사생활** 역시 소중하겠죠?

3

“성적인 오해를 줄 수 있는 개인적 행동” 삼가기

육체적(신체 접촉, 친근감의 표시라며 만지거나 들추기)
언어적(성적 농담, 신체 특징 평가 또는 비유)
시각적(성적인 그림이나 글자 낙서, 특정 신체 부위 들여다 보거나 사진찍기)

성적인 오해를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
 선생님도 '남녀무관'하게 성적 굴욕감, 수치심, 혐오감을 느껴요.

학생, 학부모님의 권리 만큼, 선생님 대상의 '성적 침해' 예방 역시 중요하겠죠?

4

“근거없는, 선생님에 대한 거짓 / 모욕 퍼뜨리기” 삼가기

내가 볼었는데, 대답이 없네.
 못 들은 척 하시는 거 맞지? **헛소리!!**
 선생님 진짜 나한테 차별해

유언비어, 비방, 모욕적인 별명을 퍼뜨리는 건 '명예훼손'과 같아요!
 선생님도 언어폭력에 상처입는답니다.

학생, 학부모님의 권리 만큼, 선생님의 명예와 자존감 역시 소중하겠죠?

“그럼 선생님과 관계 속에서 속상한 일이 생기면, 어찌죠?”

우리 <마음 신호등>을 기억해요!

멈춤

일단 멈추고
10 까지 세며, 나에게 '진정해'라고 말하기

- 소리 지르지 않기
- 욕설하지 않기
- 기물 파손 하지 않기
- 폭력 행위 하지 않기

생각

천천히 크게 심호흡
3번 이상 하기

- 나의 마음과 바람은?
-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?
- 더 좋은 표현방법은?

표현

상대방 입장 존중하며
내 입장 차분히 표현

- '나 전달법' 이용 : 비난 없이 '나'를 주어로 이야기

[사실+나의 감정+구체적 바람]

이렇게 차분히 나의 감정과 원하는 바를 전해주면 선생님께서 내 마음과 소망을 읽으시고 오해를 풀어주시거나, 더 나은 관계를 위한 노력을 해주시겠죠?

마음 신호등 3단계로 건강하고 원만한 사제관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우리 교육 공동체 모두 교권 보호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며 서로 존중하도록 합시다.

[출처]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가장 쉬운 방법, 교권 보호! 작성자 교육부

3. 청렴 교육 (2018년 개정된 내용 중심으로)

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,
사교·의례,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선물,
경조사비 상한액이 조정됩니다.

선물은 이전처럼 **5만원까지** 가능합니다.
다만, **농수산물, 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원까지** 가능합니다.

축의금·조의금 상한액은 종전 10만원에서 **5만원**으로 내리되,
화환·조화는 **10만원**까지 가능합니다.

참고로, 음식물은 이전처럼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.



	기존	변경
 음식물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 등	3만원	3만원 기존과 같음
 선물 금전,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	5만원	5만원 농수산물가공품* 10만원
 경조사비 축의금·조의금	10만원	5만원 화환·조화** 10만원

* 농수산물, 농수산물가공품(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% 넘게 사용하여 가공)은 10만원까지 가능
 ** 축의금·조의금 5만원을 주면서 5만원짜리 화환·조화를 함께 주는 것도 가능

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,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?

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, 수산물뿐만 아니라
축산물, 임산물도 포함됩니다.



※ 관련 법령

· 농수산물 품질관리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농수산물"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.

가. 농산물: 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

·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농업"이란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6. "농수산물"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농산물: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?

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,
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.



※ 다만,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.

출판기념회,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?

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,
사교·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
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

직무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?

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
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
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.



- ※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(예시)
-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
 -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
 -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
 - 상급 공직자가 위로·격려·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
 - 다른 법령·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

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축의금을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?

부조 목적으로 5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.



※ 공직자가 받는 축의금·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.

부친상을 당한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?

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
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,
조의금은 5만원, 화환·조화는 10만원을
각각 넘어서는 안 됩니다.



조의금 5만원 + 화환 5만원
조의금 3만원 + 화환 7만원



조의금 7만원 + 화환 3만원